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가치형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투자 전략에 ESG 평가 프로세스 추가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투자 전략에 ESG 평가 프로세스 추가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며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시장 전망에 따른 능동적인 포트폴리오 교체를 통해 벤치마크 대비 장기적, 누적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또한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 가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반영하여 비재무적 위험 요인을 관리합니다.
투자비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추가)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총보수·비용 추가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연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 인력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가치형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투자 전략에 ESG 평가 프로세스 추가
-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구 수정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투자 전략에 ESG 평가 프로세스 추가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며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시장 전망에 따른 능동적인 포트폴리오 교체를 통해 벤치마크 대비 장기적, 누적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또한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 가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반영하여 비재무적 위험 요인을 관리합니다.
요약정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u>수수료 및 총보수</u> (추가)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u>총비용</u> 예시 (단위: 천원)	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u>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총보수·비용</u> 추가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u>총보수·비용</u> 예시(단위: 천원)
제 1 부.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신설)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제 2 부.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제 2 부.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제 2 부.6.다. 모자형구조	투자 전략에 ESG 평가 프로세스 추가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p> <p>(생략)</p> <p>투자목적</p> <p>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시장 전망에 따른 능동적인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벤치마크 대비 장기적, 누적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p>이 투자신탁은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를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p> <p>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의 선정은 집합투자업자의 벨류에이션 모델을 통해 발굴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가 확보된 Buying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또한 장기 자산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투자가능비중의 8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p> <p>(생략)</p> <p>투자목적</p> <p>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또한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 가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반영하여 비재무적 위험 요인을 관리합니다.</p> <p>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p>이 투자신탁은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를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p> <p>이 투자신탁은 기업의 재무 역량에 기초하여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여 편입한 후 적정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기다려 수익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경제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평가 기업을 재무적 기준으로만 평가 하기에 다양한 요소 존재합니다.</p> <p>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가치 평가 단계에서부터 가치주 발굴을 위한 재무 분석과 함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병행하는 ESG 통합 전략</p>

		<p>전략적 차원의 자산배분은 매월 집합투자업자의 자산배분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재무 템플릿(Financial Templates) 등을 이용한 기업분석과 기업탐방을 바탕으로 종목 교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p> <p>(이하 생략)</p>	<p>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가치에 대한 분석 기준을 강화합니다.</p> <p>ESG 통합 전략을 통해 기업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요소들과 더불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경제, 산업 및 기업 성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p> <p>(현행과 같음)</p>
제 2 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투자 전략에 ESG 평가 프로세스 추가	<p>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100% 이하의 범위에서 투자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시장 전망에 따른 능동적인 포트폴리오 교체를 통해 벤치마크 대비 장기적, 누적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100% 이하의 범위에서 투자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 가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반영하여 비재무적 위험 요인을 관리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시장 전망에 따른 능동적인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벤치마크 대비 장기적, 누적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제 2 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p>가. 자투자신탁(생략)</p> <p>(신설)</p>	<p>가. 자투자신탁(현행과 같음)</p> <p>나. 모투자신탁</p> <p>(기존 제 2 부. 별첨 1.4.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내용 이동)</p>
제 2 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p>(신설)</p>	<p>[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p> <p>(기존 제 2 부. 별첨 1.5.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내용 이동)</p>
제 2 부. 9.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	[별첨 1] 참조	[별첨 2] 참조

<p>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p>	<p>관리에 ESG 평가 프로세스 추가</p>		
<p>제 2 부.11.가. 매입</p>	<p>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p>	<p>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 및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u>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타인의 대리인인 경우, 매입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매입신청인이 당사자 본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자료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은 거절됩니다.</u> <u>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p>	<p>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 및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u>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p>
<p>제 2 부.12.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p>	<p>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p>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생략)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⑨ (생략)</p>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현행과 같음) 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⑨ (현행과 같음)</p>
<p>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p>	<p>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p>	<p>(추가)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p>	<p>총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추가)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총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p>

비용		(추가)	<u>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추가)</u>
제 2 부.14.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p> <p>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p> <p>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p> <p>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p> <p>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p>※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의 10%(300 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p>※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p>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기 연금 저축과 합산한 저축 불입액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 만원 한도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2015.1.1.이후 납입분)은 추가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분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p>
--	--	--	---

			<p>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p> <p>-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연금 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고,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p> <p>- 종합 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p>
--	--	--	---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제 2 부.별첨 1.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생략	(삭제)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별첨 1] 운용전략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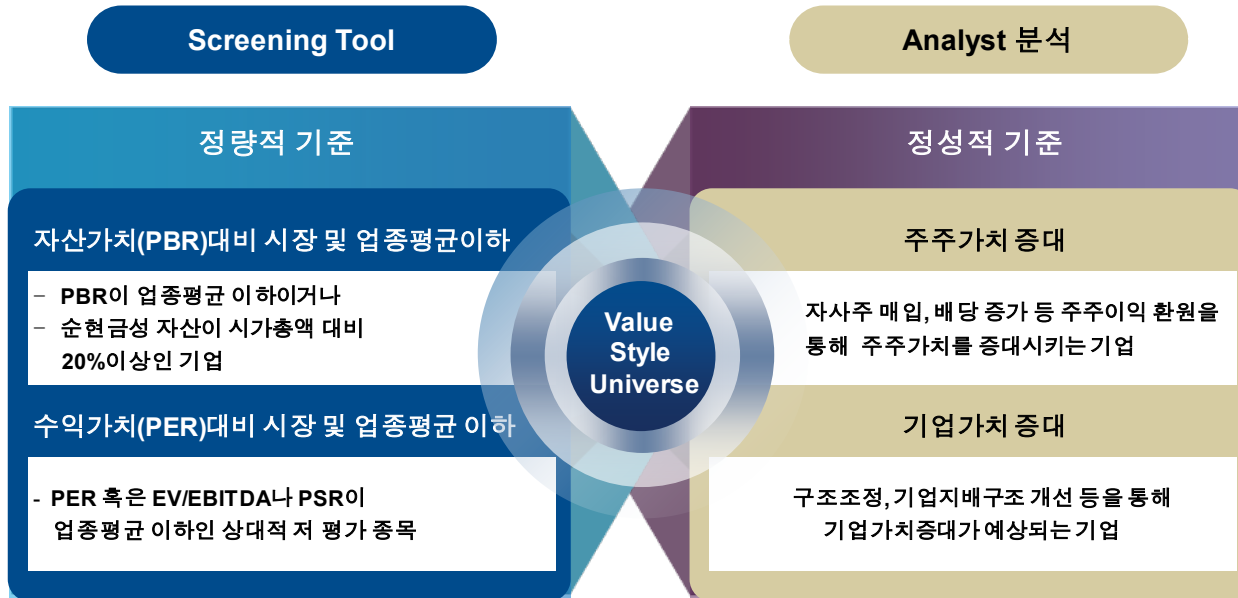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를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의 선정은 집합투자업자의 밸류에이션 모델을 통해 발굴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가 확보된 Buying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또한 장기 자산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투자가능비중의 8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합니다.
- 전략적 차원의 자산배분은 매월 집합투자업자의 자산배분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재무 템플릿(Financial Templates) 등을 이용한 기업분석과 기업탐방을 바탕으로 종목 교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가치주 유니버스 선정기준 : 저PBR, 저PER>



* PBR(Price on Book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 주가와 1주당 순자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서 구함

* PER(Price Earnings Ratio, 주가수익률): 주가를 1주당 세후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1주당 세후순이익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 되어 있는가를 나타냄. 과거와 현재, 유사종목들간의 세후순이익과 주가를 비교,

PER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음을 의미

* **PSR(Price Sales Ratio, 주가매출액비율)** 주가를 주당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함.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개발하는데 이용되는 투자지표로 주가매출액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일수록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임을 의미

* **EV(Enterprise Value, 총 기업가치)** 기업 매수자가 기업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뜻하며, 주식 시가 총액(시장에서 형성된 주가가격에 그 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 순부채(총차입금 - 현금예금)를 더한 것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이전의 이익으로, 편의상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구함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거래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KOSPI X 100%]**

[별첨 2] 운용전략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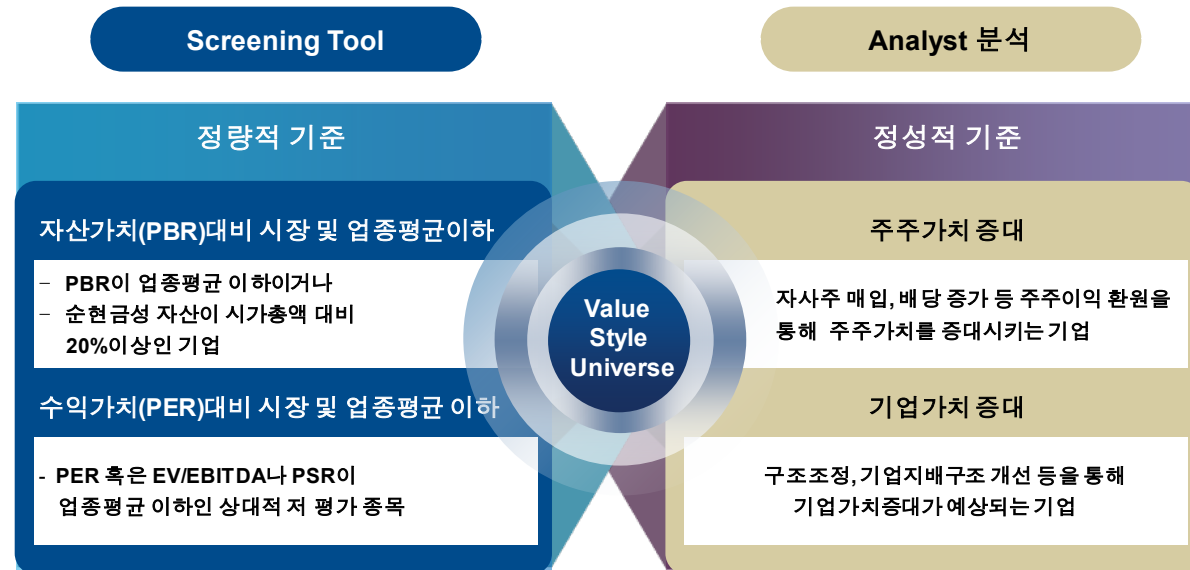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를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가치주 유니버스 선정기준 : 저PBR, 저PER]



* **PBR(Price on Book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 주가와 1주당 순자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서 구함

* **PER(Price Earnings Ratio, 주가수익률)**: 주가를 1주당 세후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1주당 세후순이익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 되어 있는가를 나타냄. 과거와 현재, 유사종목들간의 세후순이익과 주가를 비교, PER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음을 의미

* **PSR(Price Sales Ratio, 주가매출액비율)** 주가를 주당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함.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개발하는데 이용되는 투자지표로 주가매출액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일수록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임을 의미

* **EV(Enterprise Value, 총 기업가치)** 기업 매수자가 기업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뜻하며, 주식 시가 총액(시장에서 형성된 주식가격에 그 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 순부채(총차입금 - 현금예금)를 더한 것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이전의 이익으로, 편의상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구함

[가치주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ESG 요소 평가 적용]

이 투자신탁은 기업의 재무 역량에 기초하여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여 편입한 후 적정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기다려 수익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경제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평가 기업을 재무적 기준으로만 평가 하기에 다양한 요소 존재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가치 평가 단계에서부터 가치주 발굴을 위한 재무 분석과 함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병행하는 ESG 통합 전략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가치에 대한 분석 기준을 강화합니다.

ESG 통합 전략을 통해 기업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요소들과 더불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경제, 산업 및 기업 성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베어링 ESG 평가방법]

-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석을 위해 기업의 특성과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ESG 평가 항목을 자체적으로 선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리서치를 통해 개별 기업의 ESG 등급을 산정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반영합니다.
-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각각의 평가 항목에 모두 중점을 두지만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최종 평가 등급을 산출합니다.
- ESG 평가는 베어링 그룹의 선진 기법을 바탕으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ESG 분석 평가 능력을 보유한 애널리스트의 독자적인 기업 평가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를 위해 MSCI, SUSTAINALYTICS의 평가 데이터를 기초로 개별 기업 등급 및 세부 항목을 검토하는 등 외부 리서치 지원 자료도 적극 활용합니다.

[베어링 ESG 평가 항목]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 배출을 낮추는 프로그램 존재 여부 원재료 소싱, 제조, 유통 등 전반의 과정에서 탄소발자국 감소 프로그램 존재 여부 물 사용량 관리에 회사의 고위 협의체 (지속가능협의회)가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영위지역에 대한 재생 및 복구 프로그램 여부 환경관리시스템의 유무 클린테크 혁신이 핵심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 규모, 최근 구조조정/대량해고, 고급기술 보유 및 고도훈련 된 인력 의존도 성과 연동 금전적 보상, 그 외 비금전적 보상 높은 부상률, 사망자 발생 섹터 데이터 수집과 사용 정책의 엄격함, 데이터 보안 관리 시스템의 엄격함 대출이 과도하게 높은 가계 노출도, 고위험 금융 상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략 우려되는 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노출도, 관련 규제 노출도 분쟁 소지가 있는 원재료 의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회장의 독립성 유무(임원, CEO가 겸임할 경우 감점)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이 절반이상인지 여부 감사회에 임원진 포함 유무 (있을시 감점) 최대주주 혹은 임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이슈 유무(소송, 배임 등) 임원들의 급여,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이 동종업계와 비교했을때 과도한지 여부 임원진들의 일회성의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 유무

※ 동 평가 항목은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며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 항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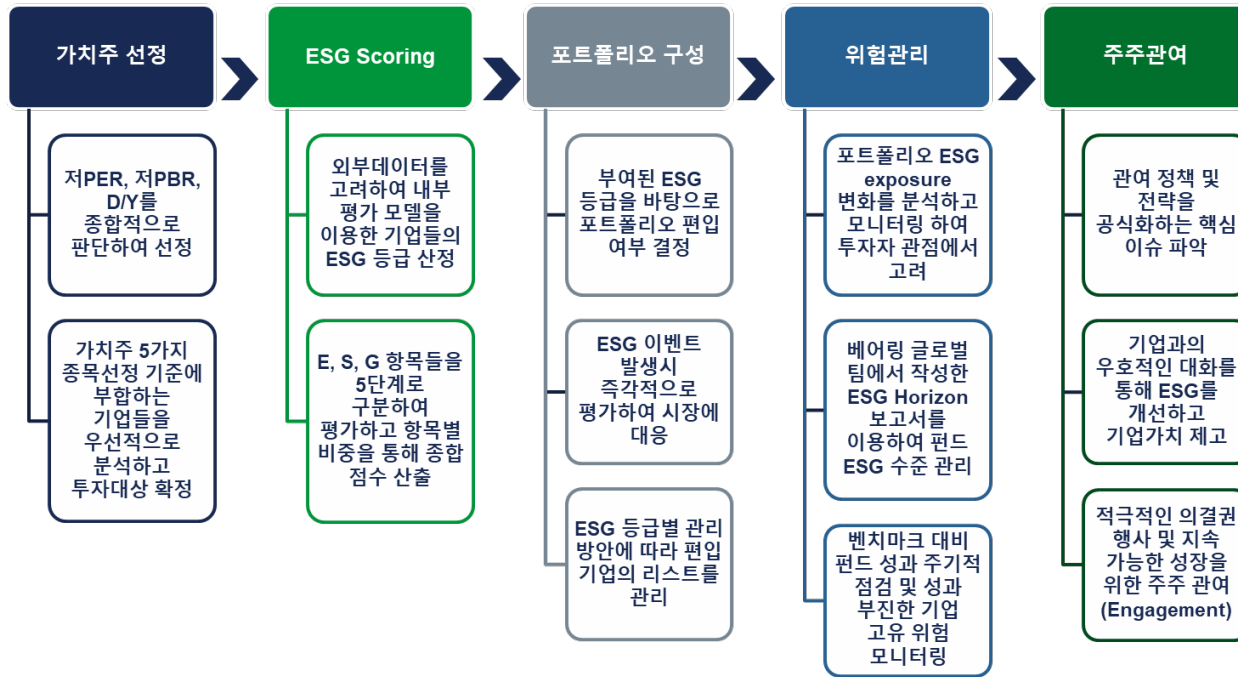
[베어링 ESG 평가 등급]

등급	의미
Excellent	ESG의 가치를 기업 조직과 사업구조에 잘 반영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제한적
GOOD	ESG의 가치를 기업조직 또는 사업구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구조적인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전망
AVERAGE	ESG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업 조직과 사업구조에 반영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진행이 미진
Poor	ESG의 가치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경영전략이 아직 명확하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
Unfavorable	ESG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움

[ESG 통합 포트폴리오 전략]

- 베어링 자산운용은 ESG 평가 등급을 5 개(Excellent, Good, Average, Poor, Unfavorable)로 분류하고 각 E,S,G 별로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업이 속한 섹터에 따라 미리 정한 E,S,G 섹터 비중을 각각의 E,S,G 점수에 곱하여 최종 종합 점수를 산출하여 ESG 평가 등급을 부여합니다.
- ESG 평가 등급은 재무분석을 통해 산출된 기업의 최종 가치에 premium 과 discount 로 반영되어 재무적 분석과 ESG 분석이 통합된 기업의 최종 가치가 산출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베어링 자산운용에서 자체 평가한 AVERAGE 등급 이상의 기업에 포트폴리오의 50% 이상 투자합니다.
- 다만,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종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체 ESG 평가 등급이 Average 미만인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업과의 우호적인 대화를 통해 ESG 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주 관여(Engagement)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베어링자산운용은 ESG 평가등급 외에도 기업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ESG 등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ESG 전망등급을 제안하고 관리합니다.

[가치주에 기반한 ESG 통합 투자 프로세스]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거래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KOSPI X 100%]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밸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집합투자기구 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투자 전략에 ESG 평가 프로세스 추가
-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구 수정
-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요약정보	투자 전략에 ESG 평가 프로세스 추가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며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시장 전망에 따른 능동적인 포트폴리오 교체를 통해 벤치마크 대비 장기적, 누적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또한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 가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반영하여 비재무적 위험 요인을 관리합니다.
요약정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u>수수료 및 총보수</u> (추가)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u>총비용</u> 예시 (단위: 천원)	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u>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총보수·비용</u> 추가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u>총보수·비용</u> 예시(단위: 천원)
제 1 부.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신설)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X
제 2 부.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연혁 업데이트	(생략)	연혁 추가

<p>제 2 부.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p>	<p>작성일 기준 업데이트</p>	<p>(생략)</p>	<p>운용현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p>
<p>제 2 부.6.다. 모자형구조</p>	<p>투자 전략에 ESG 평가 프로세스 추가</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p> <p>(생략)</p> <p>투자목적</p> <p>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시장 전망에 따른 능동적인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벤치마크 대비 장기적, 누적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p>이 투자신탁은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를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p> <p>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의 선정은 집합투자업자의 벨류에이션 모델을 통해 발굴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가 확보된 Buying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또한 장기 자산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투자가능비중의 8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p> <p>(생략)</p> <p>투자목적</p> <p>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또한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 가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반영하여 비재무적 위험 요인을 관리합니다.</p> <p>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p> <p>이 투자신탁은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를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p> <p>이 투자신탁은 기업의 재무 역량에 기초하여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여 편입한 후 적정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기다려 수익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경제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평가 기업을 재무적 기준으로만 평가 하기에 다양한 요소 존재합니다.</p> <p>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가치 평가 단계에서부터 가치주 발굴을 위한 재무 분석과 함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병행하는 ESG 통합 전략</p>

		<p>전략적 차원의 자산배분은 매월 집합투자업자의 자산배분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재무 템플릿(Financial Templates) 등을 이용한 기업분석과 기업탐방을 바탕으로 종목 교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p> <p>(이하 생략)</p>	<p>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가치에 대한 분석 기준을 강화합니다.</p> <p>ESG 통합 전략을 통해 기업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요소들과 더불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경제, 산업 및 기업 성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p> <p>(현행과 같음)</p>
제 2 부.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투자 전략에 ESG 평가 프로세스 추가	<p>이 투자신탁은 신탁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100% 이하의 범위에서 투자합니다. 특히 자산가치(PBR) 및 수익가치(PER) 대비 시장 및 업종평균 이하인 종목, 주주가치 및 기업가치를 증대할 수 있는 종목인 가치주로 구성된 포트폴리오에 투자하여 벤치마크 대비 장기적, 누적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종목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100% 이하의 범위에서 투자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 가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반영하여 비재무적 위험 요인을 관리합니다.</p> <p>이 투자신탁은 장기적인 시장 전망에 따른 능동적인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 벤치마크 대비 장기적, 누적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p>
제 2 부.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가. 자투자신탁(생략) (신설)	가. 자투자신탁(현행과 같음) 나. 모투자신탁 (기존 제 2 부. 별첨 1.4.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내용 이동)
제 2 부.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신설)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기존 제 2 부. 별첨 1.5. 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및 수익구조 내용 이동)
제 2 부. 9.	모투자신탁의 투자전략 및 위험	[별첨 1] 참조	[별첨 2] 참조

<p>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p>	<p>관리에 ESG 평가 프로세스 추가</p>		
<p>제 2 부.11.가. 매입</p>	<p>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관련 자구 수정</p>	<p>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u>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타인의 대리인인 경우, 매입신청인은, 당사자 본인의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매입신청인이 당사자 본인의 신원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였고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확인서 제출을 요청 받게 됩니다.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자료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은 거절됩니다.</u> <u>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p>	<p>4) 신원확인자료 및 자금세탁 방지 자금세탁방지과 관련된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기 위하여, <u>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은 신원확인을 위한 자료(법인의 경우 법인의 법적 실체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판매회사로부터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의 매입신청인이 신원확인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하여 고객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판매회사가 해당 신청인의 매입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매회사는 환매대금의 지급이 자금세탁방지 기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통지 받거나 의심되는 수익자의 환매대금 지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u></p>
<p>제 2 부.12.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p>	<p>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변경)</p>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②(생략) ③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이 발표하는 가격 ④~⑨ (생략)</p>	<p>①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 포함)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②(현행과 같음) ③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 포함) 등이 발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 ④~⑨ (현행과 같음)</p>
<p>제 2 부.13.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p>	<p>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p>	<p>(추가)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p>	<p>총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추가)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총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p>

비용		(추가)	<u>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추가)</u>
제 2 부.14.나. 과세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p> <p>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p> <p>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4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700 만원 한도로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p>	<p>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연금저축계좌 과세관련 주요 사항]</p> <p>납입요건: 가입기간 5 년 이상, 연 1,800 만원 한도 (퇴직연금 및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한도 외로 추가 포함</p> <p>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p>※ 계약기간이 만료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연금 계좌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 금액의 10%(300 만원 한도) 추가 세액공제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p> <p>※ 종합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 거주자 [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하는</p>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근로자의 추가 부담금은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4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 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기 연금 저축과 합산한 저축 불입액한도와는 별도로, 연 300 만원 한도 내에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2015.1.1.이후 납입분)은 추가 세액공제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및제 2 호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p>	<p>분부터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5%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p>5)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p> <p>①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종합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금액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 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p>
--	--	--	---

			<p>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p> <p>※2020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 계좌에 납입한 분부터 적용</p> <p>- 「조세특례제한법」 제 91 조의 18 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0 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전환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연금 계좌 납입액에 포함하고,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을 적용할 때 전환 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직전 과세 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합니다.</p> <p>- 종합 소득이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 14 조제 3 항제 6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2 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50 세 이상인 거주자는 2022 년 12 월 31 일까지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을 적용하는 경우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당해연도 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 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4 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1 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 계좌에 납입한</p>
--	--	--	---

			금액(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연금저축 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 만원이내의 금액)과 연 7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제 2 부.별첨 1.모집 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생략	(삭제)
제 4 부.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다.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라. 운용자산규모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별첨 1] 운용전략 변경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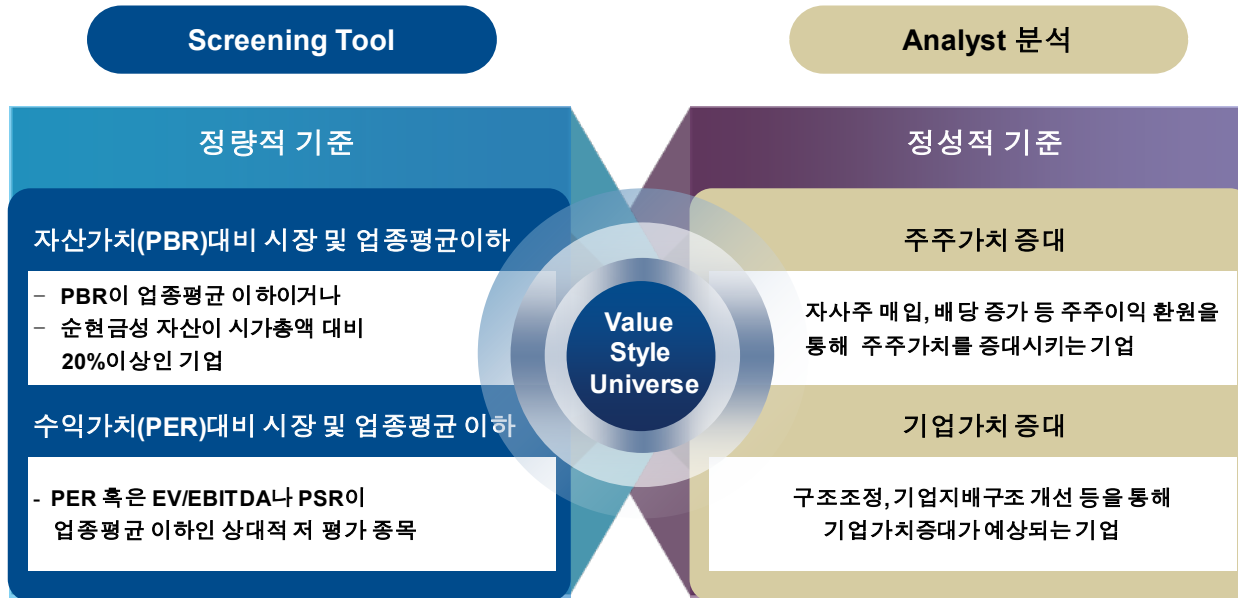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이 투자신탁은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를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의 선정은 집합투자업자의 밸류에이션 모델을 통해 발굴된 재무적 안정성과 성장성 및 가치가 확보된 Buying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 중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합니다. 또한 장기 자산운용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식투자가능비중의 8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극단적이고 빈번한 자산배분 전략은 지양합니다.
- 전략적 차원의 자산배분은 매월 집합투자업자의 자산배분위원회에 의해 결정되며 재무 템플릿(Financial Templates) 등을 이용한 기업분석과 기업탐방을 바탕으로 종목 교체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입니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가치주 유니버스 선정기준 : 저PBR, 저PER>



* PBR(Price on Book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 주가와 1주당 순자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서 구함

* PER(Price Earnings Ratio, 주가수익률): 주가를 1주당 세후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1주당 세후순이익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 되어 있는가를 나타냄. 과거와 현재, 유사종목들간의 세후순이익과 주가를 비교,

PER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음을 의미

* **PSR(Price Sales Ratio, 주가매출액비율)** 주가를 주당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함.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개발하는데 이용되는 투자지표로 주가매출액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일수록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임을 의미

* **EV(Enterprise Value, 총 기업가치)** 기업 매수자가 기업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뜻하며, 주식 시가 총액(시장에서 형성된 주가가격에 그 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 순부채(총차입금 - 현금예금)를 더한 것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이전의 이익으로, 편의상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구함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거래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KOSPI X 100%]**

[별첨 2] 운용전략 변경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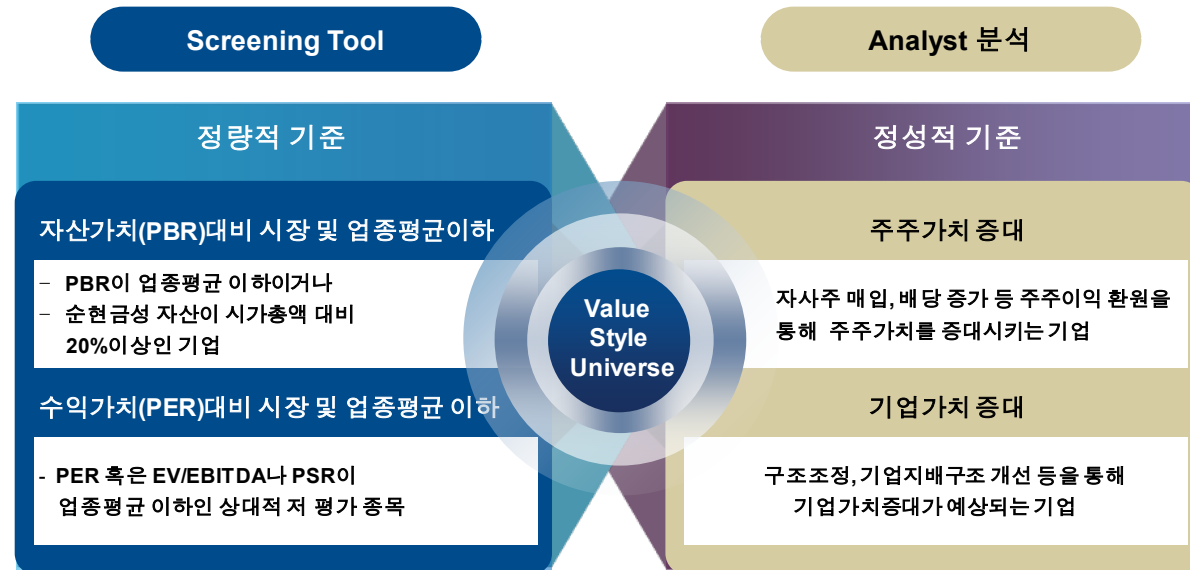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

가. 투자 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더불어 계량 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잠재력 분석에 근거하여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를 중심으로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장기적인 시장전망에 따라 능동적으로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수익률 극대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가치주 유니버스 선정기준 : 저PBR, 저PER]



* **PBR(Price on Bookvalue Ratio, 주가순자산비율)**: 주가와 1주당 순자산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주가를 1주당 순자산으로 나누어서 구함

* **PER(Price Earnings Ratio, 주가수익률)**: 주가를 1주당 세후순이익으로 나눈 것으로 1주당 세후순이익이 주가에 어떻게 반영 되어 있는가를 나타냄. 과거와 현재, 유사종목들간의 세후순이익과 주가를 비교, PER가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순이익에 비해 주가가 낮게 평가되어 있음을 의미

* **PSR(Price Sales Ratio, 주가매출액비율)** 주가를 주당매출액으로 나누어 구함. 기업의 성장성에 주안점을 두고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주식을 개발하는데 이용되는 투자지표로 주가매출액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일수록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임을 의미

* **EV(Enterprise Value, 총 기업가치)** 기업 매수자가 기업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뜻하며, 주식 시가 총액(시장에서 형성된 주가가격에 그 주식 수를 곱한 금액)에 순부채(총차입금 - 현금예금)를 더한 것

*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현금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수익성 지표, 이자비용, 법인세, 감가상각비를 공제하기 이전의 이익으로, 편의상 영업이익과 감가상각비를 더해서 구함

[가치주 포트폴리오 구성을 위한 ESG 요소 평가 적용]

이 투자신탁은 기업의 재무 역량에 기초하여 저평가된 기업을 발굴하여 편입한 후 적정 가치에 수렴할 때까지 기다려 수익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경제 및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저평가 기업을 재무적 기준으로만 평가 하기에 다양한 요소 존재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업의 가치 평가 단계에서부터 가치주 발굴을 위한 재무 분석과 함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에 대한 명시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병행하는 ESG 통합 전략을 통해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가치에 대한 분석 기준을 강화합니다.

ESG 통합 전략을 통해 기업의 재무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무적 요소들과 더불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들을 분석하고, 이들이 경제, 산업 및 기업 성과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며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 결정을 내립니다.

[베어링 ESG 평가방법]

-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석을 위해 기업의 특성과 시장 환경에 부합하는 ESG 평가 항목을 자체적으로 선정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리서치를 통해 개별 기업의 ESG 등급을 산정하고 포트폴리오 구성에 반영합니다.
-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 각각의 평가 항목에 모두 중점을 두지만 개별 기업이 속한 산업의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하여 최종 평가 등급을 산출합니다.
- ESG 평가는 베어링 그룹의 선진 기법을 바탕으로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ESG 분석 평가 능력을 보유한 애널리스트의 독자적인 기업 평가를 통해 이루어 집니다. 또한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평가를 위해 MSCI, SUSTAINALYTICS의 평가 데이터를 기초로 개별 기업 등급 및 세부 항목을 검토하는 등 외부 리서치 지원 자료도 적극 활용합니다.

[베어링 ESG 평가 항목]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탄소 배출을 낮추는 프로그램 존재 여부 원재료 소싱, 제조, 유통 등 전반의 과정에서 탄소발자국 감소 프로그램 존재 여부 물 사용량 관리에 회사의 고위 협의체 (지속가능협의회)가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 사업영위지역에 대한 재생 및 복구 프로그램 여부 환경관리시스템의 유무 클린테크 혁신이 핵심 전략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력 규모, 최근 구조조정/대량해고, 고급기술 보유 및 고도훈련 된 인력 의존도 성과 연동 금전적 보상, 그 외 비금전적 보상 높은 부상률, 사망자 발생 섹터 데이터 수집과 사용 정책의 엄격함, 데이터 보안 관리 시스템의 엄격함 대출이 과도하게 높은 가계 노출도, 고위험 금융 상품,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전략 우려되는 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한 노출도, 관련 규제 노출도 분쟁 소지가 있는 원재료 의존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사회회장의 독립성 유무(임원, CEO가 겸임할 경우 감점) 이사회에서의 사외이사 비중이 절반이상인지 여부 감사회에 임원진 포함 유무 (있을시 감점) 최대주주 혹은 임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이슈 유무(소송, 배임 등) 임원들의 급여, 인센티브를 포함한 금액이 동종업계와 비교했을때 과도한지 여부 임원진들의 일회성의 과도한 인센티브 지급 유무

※ 동 평가 항목은 일반적인 평가 기준이며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평가 항목이 바뀔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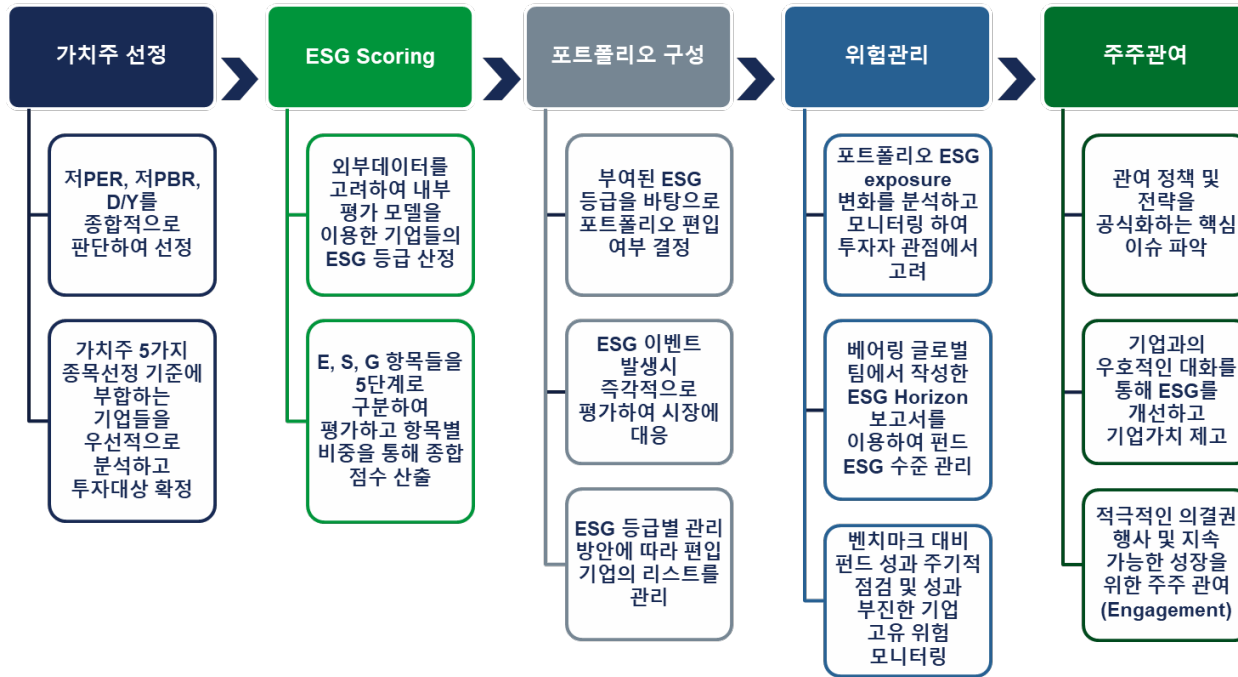
[베어링 ESG 평가 등급]

등급	의미
Excellent	ESG의 가치를 기업 조직과 사업구조에 잘 반영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인 리스크가 상당히 제한적
GOOD	ESG의 가치를 기업조직 또는 사업구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구조적인 리스크가 크게 줄어들 전망
AVERAGE	ESG의 가치를 인식하고 이를 기업 조직과 사업구조에 반영하는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나 진행이 미진
Poor	ESG의 가치를 인식하고는 있으나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경영전략이 아직 명확하지 못하여 개선이 필요
Unfavorable	ESG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거나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어려움

[ESG 통합 포트폴리오 전략]

- 베어링 자산운용은 ESG 평가 등급을 5 개(Excellent, Good, Average, Poor, Unfavorable)로 분류하고 각 E,S,G 별로 등급에 따른 점수를 부여합니다.
- 기업이 속한 섹터에 따라 미리 정한 E,S,G 섹터 비중을 각각의 E,S,G 점수에 곱하여 최종 종합 점수를 산출하여 ESG 평가 등급을 부여합니다.
- ESG 평가 등급은 재무분석을 통해 산출된 기업의 최종 가치에 premium 과 discount 로 반영되어 재무적 분석과 ESG 분석이 통합된 기업의 최종 가치가 산출됩니다.
- 이 투자신탁은 베어링 자산운용에서 자체 평가한 AVERAGE 등급 이상의 기업에 포트폴리오의 50% 이상 투자합니다.
- 다만, 재무적 요인과 비재무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종목을 선정하기 때문에 자체 ESG 평가 등급이 Average 미만인 기업에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기업과의 우호적인 대화를 통해 ESG 를 개선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의결권행사 및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주주 관여(Engagement) 정책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베어링자산운용은 ESG 평가등급 외에도 기업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ESG 등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여부를 분석하여 ESG 전망등급을 제안하고 관리합니다.

[가치주에 기반한 ESG 통합 투자 프로세스]



집합투자업자는 본 투자전략을 통하여 이 투자신탁의 수익률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나,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이 반드시 수행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2)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재산의 대부분을 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식거래시장의 흐름을 반영한 아래의 비교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비교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비교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등록 후 법령에서 정한 절차(수시공시 등)에 따라 공시될 예정입니다.

※ 비교지수: [KOSPI X 100%]

집합투자기구 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비교표

1. 집합투자기구명: 베어링 벨류스타일 증권투자신탁(주식)

2. 정정대상 서류: 간이투자설명서

3. 정정사유:

- 투자 전략에 ESG 평가 프로세스 추가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4. 정정사항:

항목	정정사유	정정전	정정후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투자 전략에 ESG 평가 프로세스 추가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하며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하고, 장기적인 시장 전망에 따른 능동적인 포트폴리오 교체를 통해 벤치마크 대비 장기적, 누적적으로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자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 및 공모주 중 전통적인 기본적 분석과 계량모형을 이용한 기업의 내재가치 및 성장 잠재력분석에 근거하여 구성된 업종별 저평가 가치주 중심의 포트폴리오에 투자합니다. 또한 ESG(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평가 기준을 활용하여 기업의 장기적인 공정 가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반영하여 비재무적 위험 요인을 관리합니다.
투자비용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총보수 (추가)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비용 예시 (단위: 천원)	투자비용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 총보수·비용 추가 1,000 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 (단위: 천원)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연평균 수익률 및 수익률 변동성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운용전문 인력	작성일 기준 내용 업데이트	생략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및 운용 경력년수 작성일 기준으로 내용 업데이트

